

●문화재청공고 제2022-127호

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04월 07일

문화재청장

1. 공 고 명 : 문화재 등록 예고
2. 예고내용
- 가. 대상문화재

문화재명칭(안)	수량	규격 (세로×가로, cm)	제작년대	소유자 (소재지)
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	2건	-옥중 편지 (14.0×32.8)	1918년	○○○ (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)
	2점	-상덕태상회 청구서 (18.5×20.4)	1915년	

나. 등록 예고 사유

○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

- 「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」는 의열투쟁 비밀단체 ‘광복회’를 결성하고 총사령을 역임한 박상진(朴尙鎭, 1884-1921)의 유물로, ‘광복회’연락거점의 실체와 투옥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. 「옥중 편지」는 ‘광복회’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,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 「상덕태상회 청구서」는 미쓰이물산(부산출장소)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, ‘광복회’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‘상덕태상회’의 실체, 규모,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.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, 무력투쟁, 군자금모집,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‘광복회’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.



(앞면)



(뒤면)

『옥중 편지』



『상덕태상회 청구서』

3. 등록 예고일 : 관보 공고일
4. 등록예고 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 사항

-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

「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/ 새소식 / 문화재지정예고」에 등재

다. 연 락 처

- 전 화 : (042)481-4891, 4892
- 팩 스 : (042)481-489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